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. 3. 6 선고 2023가단8603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3. D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3. 6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
나. 피고들은 연대하여 11,506,67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3. 12. 13.부터, 피고 C, D은 2023. 11. 29.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다. 피고들은 연대하여 2023. 10. 30.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,8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판결)

판사 이유빈

별지